잊힐 권리[1)]

1. 개요

심판청구인은 자신이 30여 년 전에 저지른 살인 사건의 유죄판결에 관해 자신의 이름을 적시하여 보도한 기사를 온라인기록으로 제한 없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연방민형사법원(Bundesgerichtshof)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각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심판청구인이 위 잊힐 권리에 관한 판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용하였다.

동 재판부는 본안에서, 과거 보도기사가 온라인기록으로 유포되는 데에 대한 보호청구권의 인정여부는 대립되는 관련기본권의 형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과거 사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가 이 형량에 특히 중요하다고 설시하였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이름과 연관된 검색어로써 검색엔진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기사가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심판청구인의 청구는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달리 표현의 자유 차원의 일반적 인격권에 근거를 둔다.

2. 사실관계

(1) 심판청구인은 1981년 해상의 요트에서 두 명을 사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82년 종신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 관해 슈피겔지(DER SPIEGEL)는 1982년과 1983년 3회에 걸쳐 인쇄판으로 기사를 냈다. 피소된 슈피겔 온라인 유한책임회사는 1999년부터 이 기사를 온라인기록으로 수수료 없이 제공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상적인 인터넷

1) 2019년 11월 6일자 사건번호 1 BvR 16/13(유럽법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의 적용가능성 논증과 긍정적 판단은 생략)

검색창에 심판청구인의 이름을 기입하면 첫 번째 항목으로 그 기사들이 나온다.

2002년 석방된 심판청구인이 2009년에 이르러 그 온라인 보도를 알게 된 이후, 피고 회사에 경고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금지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성을 언급하며 해당 범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신청하였다. 연방민형사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의 인격권 보호의 이익이 피고가 추구하는 공공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심판청구인의 인물과 이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당시의 형사소송과 같이 시사성이 높은 사건을 수정되지 않은 본래의 기사를 통해 알 공중의 이익은 인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2) 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자신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공중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된 것이 자기 스스로 한 일도 아니고, 이제 그 부담 없이 사회관계를 만들어 나가려 하는데, 제3자가 인터넷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면 아직도 여전히 첫 번째 위치에 그 보도기사로 연결됨으로써 자신의 인격 발현이 심각하게 제약된다는 것이다. 당시 형사소송이 주목을 끄는 시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달 수 없지만, 그렇다 하여 그 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거론할 공중의 이익이 반드시 계속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심판청구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연방민형사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재판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주문

(1) 연방민형사법원의 2012년 11월 13일자(사건번호 VI ZR330/11) 판결은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이 판결을 파기하고, 연방민형사법원에 본안을 환송한다.

4. 결정이유

(1) 이 헌법소원의 대상은 사인간의 관계에서 기본권보장이다. 여기서 기본권들은 간접적 제3자효를 통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대립되는 기본권을 상호 형량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인 측에서는, 그의 일반적 인격권(기본법 제2조 제1항[2] 및 제1조 제1항[3])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차원에 포함시켜 주장할 수 있으나, 자기정보결정권은 그렇지 않다.

표현의 자유 차원의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 발현을 심각하게 제한할만한 보도와 정보의 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 소통의 결과인 이러한 보도와 정보가 공공의 공간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표현의 공개 형식과 내용에 따라 인격 발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 보호내용은 단정적이고도 경계를 확정하여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개별 사안에 따라 제3자의 기본권과 조화시켜 도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는 탄력적이며 인격을 그 사회관계에 결부시킴으로써 상대화된다. 따라서 인격권을 근거로 포괄적인 고유의 인격을 표현할 처분권이 개개인에게 부여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인격권은, 개개의 인격이 그 개성을 스스로 결정하여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기본조건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와 구분할 것이 일반적 인격권에 속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이다. 이 역시 사법상의 간접적인 제3자효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 제3자가 개인정보를 가로채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인격 발현과 공평한 사회참여에 중

2) 기본법 제2조(일반적 인격권) 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3) 기본법 제1조(인간의 존엄) ①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요한 의미를 갖는 당사자의 특성이나 유형, 프로필을 확정하는 수단으로 삼아도, 그 당사자가 이에 대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 권리의 기능이다. 여기서 이 권리의 사인간 효력은 직접 국가에 의한 침해에 대한 보호 작용과 구분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주장과 논증의 부담은 형식적으로 일괄해서 정할 수 없고, 사인관계 각각의 상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필요성을 기준으로 형량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자신의 인격을 표현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자기정보결정권 역시 자기정보의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지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 권리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인이 자기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하는지에 관해 각자가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보한다. 여기에는 자기 고유의 인격에 해당하는 속성의 결정에 실제로 직접 참여할 권리의 보장이 포함된다.

2) 피고 측에서는 표현과 출판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 2문[4])를 인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보도기사를 온라인 기록에 올린다하여도 방송보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 정보의 유통에 정보통신의 전자시스템이 사용된다 하여 이것이 언제나 방송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립되는 기본권을 형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각각의 보장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형량에서 상황의 시간적 측면은 항상 중요하다. 판례는 범죄의 현황 보도에 관해 원칙적으로 정보의 이익에 우위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을 밝히는 보도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지만, 동시에 신상을 밝히는 보도의 이익이 갖는 정당성은 행위

4) 기본법 제5조(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① 모든 사람은 말이나 글,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권리 및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는다. 출판의 자유와 방송 및 영상을 통한 보도의 자유가 보장된다. 검열은 금지된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보기술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의 현재 여건에서 보면, 정보를 시간에 매이게 한다는 관점은 새로운 법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과거에는 인쇄매체나 방송보도를 통해 짧은 시기 동안만 공중이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그후로는 잊히고 말았지만, 오늘날에는 일단 디지털화되어 인터넷망에 탑재되면 오래도록 조회가 가능하다. 누구나 불러낼 수 있는 상태를 지속한다. 이렇게 전혀 면식이 없는 제3자가 정보를 취득하여 인터넷상에서 언급대상이 되어, 본래의 맥락을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갖고 인격 프로필에 관한 다른 정보와 결합되는데, 이는 특히 이름과 관련된 검색어를 매개로 검색엔진을 통해 유통된다.

2) 먼저 일반적 인격권의 해석과 적용을 검토한다. 개인적인 확신과 자신의 행위를 진전시키거나 변경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를 위축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기회를 허용하는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전의 입장이나 발언, 행태를 공중의 시야에 무제한 노출시켜야 하는 상황에 대한 법질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지나간 사실관계를 뒤로 물릴 수 있어야 자유로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자유의 시간적 유한성 속에 망각의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망각의 권리” 내지 “잊힐 권리”라 도식적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일반적 인격권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만이 자신의 정보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잊힐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정보가 흥미롭거나 불쾌하게, 또는 비난받을 만하다고 기억되는지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더불어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의사소통과정에서 교환된 이전의 정보 모두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도록 할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반대편의 표현 및 출판의 자유가 갖는 보호내용을 검토한다. 기사를 익명 처리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은, 공중의 알 권리와 무엇에 관해 언제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떤 형식으로 보도할 지를 결정하는 출판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다. 자율적 결정에 따라 기록되어야 제약 없는 정보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동시에 언론과 시사의 중요한 연구 및 조사의 원천인 것이다. 민주사회의 교육과 양육 및 공적 토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은 물론이다.

(3) 원심법원이 해야 할 형량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본래 적법하게 보도한 기사는 온라인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다. 당사자가 이에 대한 보호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요구한 경우에야 비로소 보호조치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다.

2) 이미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이 본래 적법했던 보도에 대한 보호조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특히 그 보도가 사생활과 인격의 발현가능성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 보도에 관해 새로이 발생한 상황과 그동안 당사자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더하여, 인터넷의 구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 정보가 어떠한 맥락에서 소통되느냐가 중요하다.

3) 또한 갈등의 타결을 위해 어떠한 강도의 보호조치로써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처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한 널리 원문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특히 이름과 연관시켜 검색엔진으로 검색하는 경우와 같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충분한 보호가 되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절충이 모색되어야 한다.

(4) 심판대상인 결정이 이러한 요청을 모든 측면에서 충족하지는 못한다.

기사의 다른 부분을 조회하고 접근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름과 결부된 조회의 경우 검색엔진을 통한 기사 조회 가능성에 대해 일정한 보호수단을 슈피겔 온라인 사가 두도록 하는 정도의 기대 가능한 조치를 할 의무를,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바탕으로 부과할 수 있었고 해야 했지 않았는가하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다.